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11. 4. 평창군수(건설과장)

나. 회부일자 : 1998. 11. 14.

다. 상정일자 : 1998. 11. 14 제6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이유

○ 1998. 9. 25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여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부서명이 변경되었으나 일부 누락된 조례가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중 제1호 내지 제2호

1. 기금운용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건설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계장 ⇒ 재난관리담당주사

나. 평창군재해대책본부운용등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중 "통제관은 건설과장이 되고 담당관은 하천방재계장이 되며"를 통제관은 건설과장이 되고 담당관은 재난관리 담당주사가 되며"로 개정한다.

다. 평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6조 제1항중 제2호증

2. 기금출납원 : 하천방재계장 ⇒ 재난관리담당주사

4. 검토 내용

가. 1998. 9. 25일자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시 누락된 부분으로서 자구 및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평창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11. 4 평창군수 (건설과장)

나. 회부일자 : 1998. 11. 14.

다. 상정일자 : 1998. 11. 14 제6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이유

○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군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일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타당성 있는
의견 제출시 반영하여야 한다.

나. 개발계획 수립원칙 기준을 정함.

다.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의 용도구획 계획
- 도로계획
- 주민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계획
- 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라. 용도구역별 입지계획 기준을 정함.
- 마. 각종 시설물 설치계획 기준을 정함.
- 바. 주거생활과의 조화와 주거환경 보전을 위하여 건축물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
- 사. 군수는 수립된 개발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 아. 군수는 개발계획이 수립중인 지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제한 할 수 있으며, 개발 계획에 결정·고시된 지역내에서는 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이용하여야 한다.

4. 검토 내용

-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준도시지역중 계획적 개발 이 필요하여 용도가 세분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개발계획 수립등),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준도지 취락지구 개발계획의 수립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나. 주요내용은 개발계획 수립원칙 기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용도구역별 입지계획기준, 각종 시설물 설치계획, 건축물 규모제한, 고시, 개발계획의 적합성 등을 정하고 있음.
- 다. 특히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는 주민 밀집으로 향후 도시화(도시지역) 가능성이 매우 높아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자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립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